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더 나아간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인권단체
제목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노동안전·인권단체 기자회견-
날짜/장소	2025년 7월 25일(금) 10시, 국회 앞
문의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10-2556-2046 민선(인권운동사랑방) 010-8644-5799

노동자 정의 조항 확대 / 원청의 사용자 책임 구체화 / 개별 손해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노동안전·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25일(금)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더 나아간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인권단체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

- 10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하며 외치는 노조법 개정 (장석관 사무장/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광장의 외침, 민주주의 요구로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노조법 (이종걸 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조법 개정 (이종란 활동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조항의 문제(한계)와 개정 방향(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
- 개인손해배상 청구 금지가 ‘노란봉투법’이다 (윤지선 활동가 / 손잡고 (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 기자회견문 (<노조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로 국회의원실 발송)

기자회견문

오랜 시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의 힘으로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난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으로 폐기했다. 노동자의 존엄과 생명을 무시하며 기업의 자유만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노조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설기계 노동자, 플랫폼 고용 대리운전, 배달, 학습지 노동자, 자동차판매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간접고용 노동자 등 870만 명의 비정형 노동자들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번번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사용자이므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47일간 단식 투쟁을 하고 97일간 다리도 펴기 힘든 철탑에 올라야만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노동자 개인 할 것 없이 수백억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려 자신과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험까지 해야만 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다. 하지만 지난 개정은 노동자들의 소송 투쟁의 결실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만을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 현재 당정협의를 노조법 개정을 놓고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후퇴시킬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등 노조법 개정의 의미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러한 행보가 윤석열의 ‘거부권’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몇 달간 노동자,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에서 우리는 외쳤다.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한 사회, 일터를 만들자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은 불평등과 불건강으로 내모는 상황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의미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광장에서의 외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안보다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섭 범위와 방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결국 교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진다면 과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겠는가?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노동자로 불리지 않고 노동권이 박탈된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 불법파견과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에 수억 원의 손배를 묻는 현실에 처해 있다. 다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우리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2조 1호 노동자 정의 조항을 더 폭넓게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노동자가 900만에 육박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건설노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탄압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한 소송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들,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면 손쉽게 탄압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포괄해야 한다.

둘째, 2조 2호 사용자 정의 조항에서 원청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송으로 다투면서 노동자의 ‘종속성’을 입증해야 했고, 원청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와도 사업장별로 다시 이를 다투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제 노동자에게 떠넘겨온 책임의 방향을 바꿔,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며 이익을 취해온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3조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에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손해배상·가압류로 가로막혀 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평생을 일해도 불가능한 천문학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옥죄어온 문제와 단절하는 ‘노란봉투법’이어야 한다.

우리는 숭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 속에 오늘의 노조법 개정 요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노조법 개정의 의미와 무게를 기억한다면, 후퇴란 있을 수 없다. 기존 안에 머무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국회는 더 나아간 노조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 후퇴가 아니라 더 나아가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우리는 아래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 정의조항 개정하라!

둘.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명시하라!

셋.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개인손배 금지하라!

2025년 7월 25일

더 나아간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인권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제주네트워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해방을 위한 전국결집 서울, 다산인권센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이집,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정의당, 제주평화인권센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발언 1. 10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하며 외치는 노조법 개정_장석관 사무장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2024년 매출액이 282조 영업이익만 27조인 기업집단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5년 정부예산은 667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그 회사는 현대기아자동차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1998년 대리점을 설립한 이래로 대리점판매노동자들은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한 톨 없고 대리점주들의 일상적인 폭언 폭행을 견디다 못해 2015년 8월22일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사장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진짜사장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3일에는 나오라는 진짜사장은 나오질 않고 계엄군이 나와서 시민연대동지들 민주노총동지들 금속동지들과 함께 이곳 국회앞 천막농성장을 사수하면서 결사로 선전투쟁 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고 내란범도 구속됐습니다.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짜사장의 방패가 되어주던 노조법 2·3조개정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간판 아래서 현대차 명함 돌리면서 25년을 현대차 대리점 공간에서 영업을 했으면 진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현대차 대리점에 사실상의 지배와 영향력을 미치는 자 또 누구겠습니까. 해서 국민 누구나가 다 알지만 현행 노조법 뒤에 숨어 있는 진짜사장들 나오라고 또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곧 개정될 노조법2조 사용자 정의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있는 개정안은 내란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개정안 보다는 오히려 한참을 후퇴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해 금속노조 동지들이 어제(7.24) 국회본청 환경노동위원장실을 점거했었습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동지도 점거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동지들은 어제밤 21시30분경 농성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저희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오늘로 1,181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진짜사장 정의선이 단체교섭에 나오라고 피가 터지게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한국사회 1,1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낙인이자 족쇄인 노조법 2·3조를 이제는 제대로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동지들과 함께 제대로 된 노조법2,3조 개정 그 끝을 꼭 보겠습니다.
투쟁!!!

<발언 2. 광장의 외침, 민주주의 요구로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노조법_이종걸 공동대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주에 서울에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의 인권활동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한 인권 활동가가 전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촉구 광장의 집회에서 한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광장에서 나선 건설노조 조합원이 윤석열 정권의 건설 노조 탄압에 대해 규탄하면서, 더불어 건설기업 사용자들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채용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들은 활동가들은 즉각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9년 LH가 발주하고, 삼한까뮤 지금은 까뮤 이앤씨가 건축을 담당한 광명시 신촌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중국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측이 저가 도급으로 인해, 제대로 임금이 돌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정주 노동자들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회사는 이주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현장의 노조 핵심 간부를 했고 했는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에 맞서는 투쟁을 40일간 이어갔습니다. 그 투쟁 속에서 해고자들은 회사와 복직을 합의하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삼한까뮤(현 까뮤 이앤씨) 이주노동자 부당해고에 맞선 건설노동자들은 “내 집안으로 들어온 짐승들은 잡아먹지 않는 게 인지 상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주노동자를 동료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소 거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지금이나 당시나 노동자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기에 주어진 일의 세계가 너무나도 힘없는 자들의 경쟁으로 놓여있던 것입니다. 불안정 노동의 확산으로 노동자로 불리지 않고,

노동권이 박탈된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결국 사회적으로 탄압받고, 차별과 혐오, 배제를 견디고 있는 소수자들의 권리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을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지난 4개월이 넘는 광장에서, 우리는 모두가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고, 고르게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 혐오와 불평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무엇을 위해 정부와 권력에 맞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세계에서 소수자가 겪는 문제를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보게 되면 사회적 의제에서 나중으로 밀리게 됩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주장도 장애의 문제만이 아닌 노동의 문제로 함께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노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가 겪는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만큼 노동권의 문제는 그만큼 멀어집니다.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노동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대우 받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권을 외치며 투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그러한 사회를 마주하기 위해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 3.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조법 개정_이종란 활동가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최근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냐, 먹고살려고 직장에 갔는데 죽음의 현장이 돼서야 되겠느냐,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어느새 죽음의 현장이 되어 왔습니다.

한낮의 폭염에 숨쉬기도 어려운 극심한 기후위기 시대에도 건설현장의 20대 청년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져 죽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화물노동자들이 극심한 과로에 내몰려 죽습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노동자들 중 연구직과 관리직을 제외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는 하청 협력업체 소속으로 또 다단계를 거친 하청의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만 하여도 70%이상이 하청 협력사 노동자인데 유해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원청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인 대로 “죽음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기본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국회라면 노동자를 위한 국회는 없는 것입니다.

택배, 화물, 배달, 플랫폼 등 진짜 노동자이지만 최소한의 노동법 적용조차 박탈당해온 90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이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할 권리,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진짜 사장 원청 책임 확실하게 법에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하는 개인 손해배상 책임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위해 노조를 만들고 정당한 교섭권을 행사해왔지만, 손해배상 폭탄으로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먹고살려고 직장에 갔는데 죽음의 현장에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같은해 한진중공업 김주익 위원장은 손배가압류를 막기위해 129일 고공농성으로 버티다 목숨을 던지며 “노동자의 투쟁이 승리하길 바란다”고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조할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섭요구에도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우울증이 일반노동자의

10배, 자살충동은 20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조차 없는,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당하여 아픈 몸과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죽게할 수 없습니다. 개별 손해배상 명백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진짜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는게 보장되는 사회
노동조합이 살아야 산재사망도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를 한탄하기 전에
죽지않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노조법 2조 3조 온전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발언 4.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조항의 문제(한계)와 개정 방향_하은성 노무사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은성 노무사입니다. 오늘 오전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정부안의 초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정부안은 노조법 제2조 1호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하는 이른바 ‘노동자 추정제’도 제외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는 등 내용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야말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면서, 사용자 정의 규정과 노동쟁의 정의 규정은 시행일을 1년 뒤로 미루고, 노동부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방법·절차·기타 사항 등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이정도면 노조법 개악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입니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제33조가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조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제대로 담고있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관계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간접고용제도의 확산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사용자·노동자의 관계가 중층적·다면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노조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투쟁해온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보장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 온 만큼 후퇴없이 진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기본권임에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1,000일을 넘게 이 자리에서 천막농성한 노동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 0.3평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목숨을 건 투쟁이 벌써 잊혀졌습니까? 고용노동부 노조설립 신고에도 불구하고 각각 14년, 20년이 지나서 노동조합을 인정받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노조 사례는 의미있는 판례로 남겨두면 충분합니까?

이것이 바로 법적 판단을 받기까지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이자, 법원의 판단에 우리의 권리를 맡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자 정의를 보다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그리고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책임은 지지않겠다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노조법은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진짜 사장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5 개인손해배상 청구 금지가 ‘노란봉투법’이다_윤지선 활동가 / 손잡고 (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노란봉투캠페인과 손잡고 활동이 시작된 지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47,547명 당시 노란봉투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바라는 법개정은 간명했습니다. “손배가압류로 적어도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은 없게 하자”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부가 반대해서, 새누리당-국민의 힘이 설득되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등 지난 12년동안 노란봉투법이 가로막힌 현실적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발의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금, 국회 논의가 가로막히지 않을 과반을 훨씬 넘어서는 국회 의석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건만큼 거부권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체 왜, ‘여기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까. 지난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장관 모두 ‘경제6개단체 면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재계의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려가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에 황당했습니다.

지난 30년, 노란봉투법 없이도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야 했습니다. 단체교섭거부, 단체협약 불이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위반, 일방적 집단해고 등 손해소송기록 속 파업의 원인은 대부분 기업의 불법행위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대공장 정규직조차도 비상스위치를 눌렀다고 손해청구를 받습니다.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원청과 교섭하도록 노동부에서 지시하고 있지만, 현대제철같은 불법파견 사업장은 노동부 지시도 무시합니다. 오늘 행정법원 선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도, 노동부와 사법부가 기업의 불법을 막을 수 없고, 현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원인제공자인 사용자 단체의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노동부 안으로 손해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파업의 원인제공을 한다는 것을 사법부도 알기 때문에,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업이 100% 이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책임제한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면서도 벌지도 갚지도 못할 금액을 개인에게 청구하고 선고하는 게 지금의 사법부이고, 쌓여있는 판례들입니다. 법원 판단에서 적시된 ‘책임제한 비율’과 ‘개인의 기여에 대한 기준’은 매우 모호합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판사 마음대로 일 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가장 최신 판례만 봐도 '손해 인과성'과 '책임비율'을 산정을 법원에 온전히 맡기자는 의견을 감히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재상고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쌍용차 손배소송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반대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폭력 인정', '경영상위기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 '파견법 위반', '교섭거부'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을 적시하고서도 끝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냈습니다.

심지어 두 판결 모두,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6월에 구속된 노동자에게 8월 국가폭력 진압 도구의 비용을 배상하게 하고, 회사의 출입금지로 점거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산별활동가에게 점거의 비용을 묻는 판결이 났습니다. 두 사건 뿐이 아닙니다. 손잡고에서 아카이브 한 손배소 사건의 94.9%가 개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해고무효소송 등 소송취하나 노조탈퇴, 퇴사와 같은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개별적으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부 소취하가 가능한 것도 개인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끝에 끝까지 기업의 불법행위에 저항한 개별 노동자들만 청구대상으로 남겨두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손배 현실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돌아가신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한 일명 '현대차 노모 소송수계 사건'도 개인이 청구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개인에게 손배청구가 계속되는 한 소송수계의 위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살아있는 위협입니다.

이런 법원에 개인손배청구에 대한 판단을 맡겨서는 노동권을 넘어 개인의 생존권마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정부도 민주당도 '입법'을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불법파업에만 손배를 청구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불법파업이라는 법적판단하에 시작되는 손배소송은 거의 없습니다. 청구 먼저 판단은 나중입니다.

판단을 받기까지 손배 소송기간은 최장 15년, 1심만 평균 2년2개월이 걸립니다. 청구금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인지대 등 법률비용 마련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항소조차 어렵습니다. 확정된 금액 또한 개인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연이자만 무한증식입니다. 이같은 점을 국제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올해 심의에 들어갈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업무방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단체행동권에 대해 하위법인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업무방해죄 처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명시했습니다.

‘노동법 적용’에 대해서도 특고, 플랫폼 모두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도록 입법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한 답변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저할 명분도, 축소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국제사회에 국민들을 부끄럽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노란봉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사진>











